

수신 : 양승동 KBS 사장

참조 : 김종명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장

이주형 정치부장(정성호, 이진성, 노윤정, 하누리 기자)

**KBS 한국방송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
허위비방 명예훼손 방송에 대한 사과/정정보도 촉구와
인터뷰 요청에 대한 반박말씀**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께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중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수개월째

침해하고 있는 **KBS한국방송**에 대한 반박말씀을

참고자료<매우 중차대한 권언유착 횡포>로 송부합니다.

2020. 1. 29. (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02-523-8760~7)**

- ① 무려 30년<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1년>을 여/야당과 국회출입기자들과 미국 영국 일본의 국회의원/법조인/의회감시단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국회감시단을 KBS가 반론기회 차단 비방 방송한 것을 규탄합니다.
- ② KBS의 편파왜곡 허위 비방 명예훼손 방송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소송과, 민사<손배-소액재판-각2,000만원-최소50인>등의 법적조치 준비 중임을 말씀드리며, 신속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촉구합니다.
- ③ KBS가 공익을 위한 진실추구와 공정보도의 본분을 잊고, 국가와 국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를 범죄수사하듯 수개월째 소상공인단체와 법률연맹까지 뒷조사,인권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기자의 본분을 위반하고 취재·보도권을 오·남용하는 범죄입니다.

1. KBS의 모니터단 명예훼손 방송에 대한 사과·정정보도 촉구

가. **KBS 한국방송**이 2020. 1. 8. 07:01 ‘**[국회감시 K]** 유권자들은 알까, 이 상(賞)의 정체를?’ 이란 제목의 보도, 21:29’**[국회감시K]**⑤ 국회는 아수라장인데…사진 찍는 국회의원들“, 21:39 ‘**[국회감시K]** 의원과 상⑥ 이래서 취재했습니다.…공생의 세계“등의 보도와 1월 9일 같은 취지의 아침뉴스부터 시간대별 보도로 2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국리민복상** 그리고 이를 수상한 의원들을 비방, 능멸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KBS 사장의 정중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촉구합니다.**

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회 및 시상식에 수상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100% 참석하는 것은 KBS가 비방방송에 나설만큼 함부로 하면 안되는 20년~30년의 피나는 노고로 형성된 공신력과 국내외의 신인도가 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임에도 KBS는 온갖 비아냥 왜곡 비방을 하면서 시비걸고,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NGO)의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은 국회감시활동의 중요한 부분인바, 국회가 200~300명의 수상 국회의원(매회 70~80명)과 보좌진(매회 약150명)들의 수상시간 절약 등등 편의를 위하여 국회 밖에서가 아닌 국회경내에서 국감평가회와 시상식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여야의원의 편이에 부응한 국회 경내(주로 헌정기념관)에서의 평가회 겸 시상식을, 마치 국회사무처 내규(?)를 위반하고 부당했다는 듯이 도둑놈처럼 폄하비방하면서 심지어 평가회 겸 시상식장 대관에 대해서까지 ‘수백만원 대관료를 횡령한 듯이 조작/과장/비방하면서 - 참고로, 서울북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국회보다 낫다> 대관료가 고작 66만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KBS가 과장/조작하여 국감NGO모니터단을 악의적으로 온세계에 보도했다- 대관료를 횡령한 듯이 조작/편취하고, 공정한 평가로 수상하신 (대관)의원을 ‘편법 셀프 수상’ 이라는 허위사실/막말로 사실왜곡하며, 비방하고 제목을 ‘유권자들은 알까? 이 상(賞)의 정체를’ 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의 ‘노벨상’과 같다는 명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국감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을 무슨 ‘흑막’ 이 있거나 불공정 편파적이라고 편취하면서 시상식 사진과 일부발언을 발취하며, “एं터리 시상식” 이라고 보도한 것은,

국가기간방송인 KBS방송의 수치요,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횡포로서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범죄이며,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실천 및 실천요강 위반사안이 명백하다고 사료합니다.

다. 게다가 아무런 맥락 없이 **국회 운영위(2019. 11.28)의 회의에서 충남천안 출신인 1심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대법원이 매우중대한 직무유기중> 문제있는 이규희 의원이** 뜬금없이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을 신뢰할 수 없는 형편없는 단체로 폄하하면서,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에게 수작을 하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 부터 <지난 20년간> 수상(受賞)한 의원들의 명단과 보도 자료 등을 수집해** 달라며, **“그냥 관심 있어서”** 라고 불순한 저의가 없다는 듯이 하였으나, 이같은 행태는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 인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과 국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국회감시단체들을 음해·훼손하겠다고 **직권남용·위법한 횡포에 나선 유인태 사무총장**을 지원하면서 **악행에 합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규희 의원의 악의**를 갖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270개 단체의 명단을 달라 그랬더니 탄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 하는 등 우리 모니터단을 폄하하는 **전혀 허위 내용이 사실확인없이,여과 없이 1. 8. KBS 국회감시K를 통해 방송되었는바,**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반론권을 차단하며 허위사실인 유인태 총장의 주장만을 보도하고,** 국회사무처의 가짜뉴스, 부당한 공문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는 **국회 “사무처와 KBS의 유착” 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행태로** 봅니다.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의 국정감사모니터단 훼손/방해 만행 ◇

사안의 진실을 알려드리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2019)에서 국회사무처(총장 유인태)는 지난 15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평온·무사하게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일익을 기여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NGO모니터단」과 **270개 소속단체에게 충격과 심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국감시작 하루전날** (10. 1) **저녁** 갖가지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국정감사모니터실 사용을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사실상 불허 통보하였고, 수십년째 사용해 오고, 인터넷에서 수십만건 검색이 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¹⁾이란 단체명을 국회본관에서 사용못하게 하고, 모니터실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기만 하면 퇴출시키겠다고 엄포하며, 생뚱 맞은 ‘참관지원실’ ‘참관인석’이라고 변경하였으며, 더욱 1) ‘NGO모니터단이 지원사무실을 독점사용했다’는 100% 가짜뉴스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우리 모니터단을 모욕 명예훼손(10.1.오후)하였다,

2) 국감첫날(10.2)에는 국회본청 250호실의 문을 잠가놓고 사용치 못하게 하였으며,

3) 개천절이 지난 국감 둘째날(10.4)부터는 누구도 출입을 못하게 경위과에 지시하여 부산 등 전국에서 상경한 모니터단 주요 임원들까지 화상모니터링이나 온오프라인상의 모니터단 활동은커녕 20년 동안 사용하던 모니터실(250호실)에 입장도 못한채 내쫓았고,

4) 그후 국정감사모니터단의 공동사무국인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대학생봉사단, 은퇴자협회의 상근직원만 모니터실을 관리하기 위해 지켰으나, 국회 본청 각상임위에서 모니터링하는 현장 모니터위원들은 250호실 출입을 통제하여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 텅빈 사무실로 국감기간내내 사실상 감금상태로 지나게 되었고,〈대학생 화상모니터링도 출입통제 당하였음〉

5) 매년 모니터실에서 보내던 출입자 명단공문(경위실)은 무효이니 폐기하라고 갑질행위 (10. 2. 오후)를 하였으며,

6) 모니터단 회원단체인 270개 단체의 단순한 명단요구가 아니라, 단체의 목적·대표자와 모니터의 명단과 구체적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로 –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법(제3자정보 제공금지)을 위반케 하고, NGO모니터단을 노예처럼 통제/사찰하려는 것이었으며,

7) 국감기간 동안 속임수로 설치한 국회의원회관(216호실)과 국회본청의 ‘국감참관지원실’ 사용자가 단한명도 없었음에도 마치 잘 사용된 것처럼 국감장에서 위증(10.25)하였으며,

8) 더욱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모니터위원도 행정실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며 피감기관 뒤쪽 방청석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해 사실상 모니터링을 못하였다고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와 국감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장애를 제거하는 성공한 지렛대 시민운동으로, 미국·일본·영국의 의회, 학계/ NGO와, 국내 거개의 언론/ 여야의원/ 의원보좌진/ NGO까지 신인도 있는 NGO로 인정받고 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2019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준비한 수백명의 시민·대학(원)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 및 정치체험학습장으로써 화상모니터실(본관250호실)이 15대 국회 이후 20여년만에 폐쇄되었고, 현장모니터위원들을 위한 준비·휴게실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국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국회 본관 250호실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횡포와 출입통제로 흉위병의 상징처럼 되었다.

2. 사법기관, 또는 이를 사칭하여 우리 모니터단을 “불법사찰”치 않고는 알 수 없는 “KBS의 인터뷰 요청항목”에 대한 반박말씀

1) 노동/여성/법률/환경단체들이 1995년 창설한 한국NGO연합이 주도한 전국270개 NGO의 연대체로서, 미/영/일본의 법률가/의원/정치학자/NGO와 <극소수 편견/악의성 제외한>거개의 여/야 국회의원,보좌진,법조/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한 국보적 NGO로 자부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도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취재 및 보도) ■

- 1) 회원은 **기자의 제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회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4) 회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6) 회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7)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 8) 회원은 **공익이 “우선”** 하지<공익의 가치가 사생활피해보다 분명히 클때>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가-1. SAT 문제유출 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 법사위에 관련 질의를 요청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답변]

SAT사건 재판을 계속 방청하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미 간 형사사법공조회신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정감사시 정책질의를 모든 의원님께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첨부; 201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재경국정감사 질의 참고를 위해 배포한 자료 첨부»

SAT 문제유출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쟁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1) 저작권법의 사실상 비친고죄화의 법리적 문제

1) 한미FTA관련 해석상의 문제

2)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이 비친고죄인 국가는 없으며, 현행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서도 등록을 해서 인정받는 훨씬 강력한 권리인 특허권이 친고죄로 되어 있음에도 그보다 약한 권리인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되어 있어 잘못된 점 등 지적

(2) SAT시험지 유출사건 수사절차상의 위법성 문제

- 1) 검찰에서 내사 중임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문제(위법증거)
- 2) 컴퓨터 하드웨어 등 압수수색 당시 절차를 위반한 문제(위법증거)
- 3) 불법증거수집에 대한 증거 배제의 원칙 적용의 문제
- 4) 저작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침해물을 확보하지 않고 기소한 문제
- 5) 검찰에서 미국 법무부에 형사공조를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고도 피고인들에게 철저히 은닉하고 제공하지 않은 문제(국제공조회신은닉)
- 6) 검찰에서 미국 FBI의 수사회신문을 은닉하고 가짜 공문을 만들어서 피고인들을 속인 문제 (허위공문서위조 행사)
- 7) 검찰이 2014년 기소 당시 피고인23명의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아서 재판시작 후 2년 6개월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지연된 문제 등 피고인 등의 인권침해심각<<첨부; 언론에 보도된 SAT사건>>

증빙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SAT저작권법 위반(문제유출이 아님)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설명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가-2. 질의 요청<SAT저작권과동>당시 김대인 총재님과 홍금애 실장님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밝히셨습니까?

[답변]

국정감사의 질의내용이 SAT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재판지연 및 한미간 형사사법공조회신이 지연되는 것이 가족관계와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4명이나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잘못된 수사절차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법률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의 양심으로서 나머지 23명과 제2 제3의 피해자들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에서 보낸 질의 참고자료를 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재판장 이기리)**는 **2013고단제7148호**

「저작권법」 위반 등 사건재판에서, -사건의 쟁점인 SAT시험문제지가 미국의 시험문제출제 민간회사 ETS의 시험지가 맞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확인<미국 ETS회사의 시험지인지 아닌지를>을 위해 한국법원이 미국 정부에 사법공조 촉탁신청(2014. 9)을 하고 그 결과를 마냥 기다린다면서 2013. 11. 15. 이 사건 공소장을 접수하고도 헛수로 3년, 만2년 동안,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신속재판받을 권리)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사건접수후 6개월이내 판결선고해야 한다)를 위반하는, 위헌·위법한 재판이 2년째 중단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신속 재판원칙 위배를 문제 삼았던 것이고, 당일 국회회의록(2015년도 국감-2015. 10. 5.)을 보아도 질의한 이 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노철래 의원 등이 소추요건 불비문제, 2년동안 재판의 지연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 문제 등을 지적하자, 당시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이 지연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다” 는 답변을 하였고, 2015년 10월 08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법제처·군사법원 등 종합감사에서도 검찰의 공소취소 등에 조치주문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신속한 재판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도·감독하겠다” 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 국정감사를 모니터해 상을 주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본인 가족의 사건과 관련해 국감 질의를 요청한 것이 청탁에 해당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국감을 평가/시상하는 주체는, 23여명의 공동단장과 100여명의 임원들과

1,000여명의 모니터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지 개인이 시상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더욱 잘못된 수사와 재판 그리고 범죄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국민의 보장된 권리이며, 형사소송법(제29조)상 가족(친족)이 범죄(혐의)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이상의 권리(보조인-형소법29조)가 주어지는데, 하물며 수사와 재판과정의 위법부당한 침해를 받는 피해자가 가족(친족)일 때에는 사법감시단체의 공적 활동가는 물론이고, 개인(자연인)의 자격으로도 이의제기, 법적 문제제기 등 변론/변호/지원활동과 국감질의요청도 정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③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5. 7. 31.>

④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재판의 절차가 잘못된 것을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알려서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마땅한 책무인 것입니다.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지적을 해야 할 것은 SAT 검찰의 기소과정과 재판과정에 위헌, 위법한 문제가 심각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감사 역시 재판의 구체적 사건내용에 관여하는 질의를 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이 국회에 요청한 것 역시 한미사법공조 및 재판의 지연, 공소제기의 부적법 등 기소와 재판의 법과 원칙위반 등 절차과정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질의/질타로서 건

제해야 할 마땅한 국감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성 감시운동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질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사법감시단으로서나 단체구성원의 하나로서나 더욱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법적인 문제는커녕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국정감사 모니터단이나 법률연맹의 설립취지상 사법감시 입법감시 단체로서 공익과 국익을 위한 매우 필요하고 정당한 활동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가족여부는 전혀 무관하지만 설사,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이하 5조 2항3호의 명문을 참조요망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청탁 금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다. 법률소비자연맹이 SAT 사건 국감 질의를 한 의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시상한 것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답변]

SAT 사건에 대해 국감에서 질의한 의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왜곡입니다.

SAT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것은 SAT사건이 기소된 2013년 11월 15일 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10월 제19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이 때 3분의 의원님이 SAT 재판의 재판지연과 한미형 사공조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도별로 1-2명의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셨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시상을 한 것을 확인했으나, 노철래 의원님은 수상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의원님들이 SAT질의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부당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비친고죄로 바꾸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한,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님(우상호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 비친고죄 도입에 앞장서서 2007년부터 시행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우상호 의원은 KBS가 결부시키는 것처럼 하면 법률소비자연맹이나 우리의 원수같은 존재인데,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편적으로 막연하게 A와 B를 결부시켜 매도/모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라. SAT 사건 기소 이후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발의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사실을 크게 왜곡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률연맹에서는 2006년 비친고죄 도입 시도에 대해 다른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과 같이 우려를 표했으며, 이 때 도입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의 비친고죄 조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악법으로서 이 법을 바꾸는 것은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국회에서 2014. 4. 토론회도 하였고, 사회적 여론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지성인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BS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법의 개정을 위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0일에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기사 저작권을 침해한 의원 무려 270명을 고발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관련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 2014. 2. 고발장 및 보도자료》

그런데 문체부의 수석전문위원이 의원들의 비친고죄 폐지 법안을 비친고죄 강화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려고 공개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하여, 100만원 미만 저작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첨부; 2015. 4. 법사위원 전원에게 보낸 공문, 서울신문 등 전면광고로 저작권법 비친고죄 문제점을 알림》

마. 2016년 법무법인 로투스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입법지원사업 용역을 수주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경위로 수주했으며, 법률연맹은 해당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답변]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는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의 공동집행위원장이지만, 법무법인 로투스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입법지원 용역을 수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고, 우리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로투스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수주받은 용역의 이름도 입법지원용역이 아닌 ‘법률입법 규제 컨설팅 대행용역’으로 주업무가 법률상담과 법률서류 작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투스에서 용역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주하였고 약속한대로 다 이행을 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면서 회원단체별로 규제개혁이나 입법사항에 대해 수집을 하여 책자화 한 것을 중기청에서 이를 해소하기위해 국회에 예산을 신청해서 소상공인연합회로 주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조달청의 입찰에 의해 선정을 하였으며 과정 과정마다 중기청에 보고를 하였고 중기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은 법률상담과 법률서류작성이 주였고 입법은 주된 것이 아니었지만 법무법인 로투스에서 진행을 하다 도움 요청을 하면 도와준 것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투스는 여러명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있고 안철현변호사는 로투스의 일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창하여 2012. 4. 25. 팔레스호텔에서 중소기업, 장애인, 소외자를 돕고자하는 법률지원단 ‘명진’을 출범하였고, 대표는 부장검사 출신 유명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았고<출범사진 별첨>, 2013. 2.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인을 위한 입법, 사법 지원단이 팔레스 호텔에서 출범하였습니다.<출범사진 별첨>

그후 지금 국무총리를 하시는 정세균 의원 등 여/야중진의원과 전문가들 변호사들 NGO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 과 법률가 등 전문가와 중소기업인이 함께하는 법정치포럼을 주최하여 중소기업인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기로 합의/다짐하였습니다.<사진 별첨>

법률연맹은 쉬지 않고 이렇게 법률가/국회의원 등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창립/지원하는데 앞장 섰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지원은 몰라도 어떤 도덕적,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위원장인 안철현 변호사가 자신이 주요임원으로 있는 법률연맹에 회비나 지원금을 냈다고 하여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 로투스와 함께 입법지원사업 용역을 수주하였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시민단체이지, 법무법인이 아니어서 위의 용역지원 사업 수주의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이 사업입찰은 조달청에서 추진한 것으로 조달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어떤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첨언

SAT 저작권법 사건 관련, 그 외 내사사건에서의 압수수색 문제라든지,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것, SAT 저작권법 재판이 처음부터 검찰의 공소가 잘못되어 7년이 지난 후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 사실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 하시라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3부>

별첨 증빙서류

01. 2015. 10. 5.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02. 2015년도 국감 회의록 및 국정감사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명단
03. 2015. 3. 16. 법사위 전원에 보낸 공개질의서
04. 저작권법 비친고죄의 문제점 전면광고문 등
05. 2014. 2. 국회의원 270명 저작권법 위반 고발장 및 보도자료
06. ‘SAT 문제유출 사건’ 본질적 문제점은?(데일리한국 2016.10.31.)
07. SAT문제유출사건재판 ‘수상한 증거’ 논란(데일리한국 2016.10.15.).
09. 변론 요지서 (2018. 1. 18) - 검찰공소장의 문제점 등
10. 공소기각촉구서(2019. 1. 2)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위법수집 등
11. 법률지원단 명진 출범식 화보(서울 팔레스 호텔)
12. 중소상공인 법률지원단 출범식 화보(서울 팔레스 호텔)
13. 국회의원과 중소상공인함께 하는 법정치포럼 화보(국회 귀빈식당)